

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참여기업 인센티브

□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

-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서면평가 면제 및 선정평가 시, 기술성 평가 가점(3점) 부여

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“제조현장스마트화” 융자

- (내용) 중진공의 “제조현장스마트화” 융자 신청 시, 확인서 제출로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여부 확인 대체 가능
- (대상)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, 스마트공장 등 ICT 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
- (대출한도) 연간 100억 원 이내(운전자금은 연간 10억 원 이내)
- (대출기간) ①시설자금(10년 이내, 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, ②운전자금(5년 이내, 거치기간 : 2년 이내)
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- (기타)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(시설자금의 50% 이내)

□ 기술보증기금 “스마트제조서비스보증”

- (내용) 보증사업 중 적격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써 스마트 공장 수준진단 확인서를 요청(기보 사업 규정에 명기)
- (대상)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, 스마트 공장 구축 확인 기업
- (우대사항) 보증 비율 90~100%, 보증료 0.3~0.5%p 감면 또는 고정 보증료 0.5~0.7%(스마트공장 구축단계별로 차등 적용)

□ 중기부 중기간 경쟁제품 중 물품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신인도 평가 시 가점(수준에 따라 1~3점)